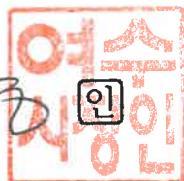
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행정기구
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29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2018호

붙임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”을 “(실·국·단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 중 “실·국장”을 “실·국·단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실·국)”을 “(실·국·단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건설교통국”을 “건설교통국, 섬박람회지원단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실·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)”을 “(실·국·단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)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섬발전지원과, 섬박람회지원과”를 “섬발전지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,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며,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,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섬박람회지원단) ① 섬박람회지원단에 섬박람회지원과, 섬박람회대책과를 둔다.

② 섬박람회지원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섬박람회 준비 및 지원
2. 섬박람회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3. 섬박람회 시민 참여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
4. 섬박람회 연계 섬지역 디지털 기반 및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
5. 섬박람회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
6. 섬박람회 숙박음식 대책에 관한 사항
7. 섬박람회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
8. 섬박람회 연계 섬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섬박람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실·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시 본청 <u>실·국장</u>의 직급과 본 청의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② (생 략)</p> <p>제3조(<u>실·국</u>)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 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, 문화산 업국, 교육복지국, 수산관광국, 환 경녹지국, <u>건설교통국</u>을 둔다.</p>	<p>제2조(실·국·단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----- <u>실·국·단장</u>의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<u>실·국·단</u>) ① ----- ----- -----<u>건설교통국, 섬박람회지 원단</u>을 둔다.</p>
<p>제4조(<u>실·국</u>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 좌기관) (생 략)</p> <p>제7조(교육복지국) ① 생략 ② 교육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 한다. 1. ~ 4. (생 략) <u>5. 자원봉사 관련업무</u> 6 ~ 14 (생 략)</p>	<p>제4조(<u>실·국·단</u>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교육복지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5 ~ 13 (현행 제6호 부터 제14호까 지와 같음)</p>
<p>제8조(수산관광국) ① 수산관광국에 관 광과, 수산경영과, 어업생산과, 해 양정책과, <u>섬발전지원과</u>, <u>섬박람회 지원과</u>를 둔다. ② 수산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 한다. 1. ~ 9. (생 략) <u>10.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및 지원 업무</u></p>	<p>제8조(수산관광국) ① ----- -----<u>섬발전지원과</u>를 둔다. ②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11.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<u><신 설></u>	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11조(섬박람회지원단) ① 섬박람회 지원단에 섬박람회지원과, 섬박람회 대책과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섬박람회지원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섬박람회 준비 및 지원</u> <u>2. 섬박람회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</u> <u>3. 섬박람회 시민 참여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</u> <u>4. 섬박람회 연계 섬지역 디지털 기반 및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</u> <u>5. 섬박람회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6. 섬박람회 숙박음식 대책에 관한 사항</u> <u>7. 섬박람회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</u> <u>8. 섬박람회 연계 섬지역 관광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</u>
<u>제11조 ~·제13조 (생략)</u>	<u>제12조 ~·제14조 (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</u>
<u>제14조 ~·제16조 (생략)</u>	<u>제15조 ~·제17조 (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)</u>
<u>제17조 ~·제19조 (생략)</u>	<u>제18조 ~·제20조 (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)</u>
<u>제20조 ~·제21조 (생략)</u>	<u>제21조 · 제22조 (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)</u>
<u>제22조 ~·제24조 (생략)</u>	<u>제23조 ~·제25조 (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)</u>
<u>제25조 (생략)</u>	<u>제26조 (현행 제25조와 같음)</u>